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
다. 허가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분양받은 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사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| 위반행위  | 근거 법조문        | 과태료 금액 |       |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  |               | 1회     | 2회    | 3회 이상  |
| 가.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경우  | 법 제12조제1항 제1호 | 2,000  | 5,000 | 10,000 |
| 나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표를 하지 않은 경우  | 법 제12조제1항 제2호 | 2,000  | 5,000 | 10,000 |
| 다.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 | 법 제12조제1항 제2호 | 1,000  | 2,000 | 5,000  |
| 라.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·보고를 하지 않거나, 거짓으로 제출·보고하거나,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| 법 제12조제2항     | 100    | 200   | 300    |